

#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come, expenditure and asset between retired elderly households and employed elderly household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강사 김연정

Consumer Studies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Lecturer : Yeon-Jeong, Kim

### ● 목 차 ●

I. 문제제기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elderly households - retired vs employed. The sample obtained from 1994 KHPS, and consisted of 628 Korean aged households who are currently married. Statistic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are mean, frequency, percentile, t-test, and relative-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In income sources, earned income was majority of employed households, but the percent of unearned income was greater than retired households. Especially, the percent of transfer income among family members was highest in retired households. While the percent of cloth, education, recreation expenditures were high in employed, and medical, housing expenditures were high percentage in retired. The percentage of real asset(housing) was majority of total asset in two groups. And the percentage of safe liquid asset of retired households was relatively higher than employed households.

### I. 문제제기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은 노인가계를 생애주기상 부(負)의 저축을 하는 단계로 인식하여 생애주기별 시간선호의 측면에서 저축과 차용의 선택행위를 설명하였고, 대부분의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 자산보유액등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주요 연구문제

로 삼았다(Hanna, Fan & Chang, 1995; Hurd, 1987; Radner, 1992, 1993; Schulz, 1992; Schwenk, 1993).

은퇴행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Atchley(1980)는 노년초기는 은퇴기와 맞물려 있어 경제생애주기상의 의존기와 일치된다고 하였고, Cowgill(1991)은 은퇴후 노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로써 외로움과 수입감소 및 경제적 의존을 제시하였다(이택룡, 1994에서 재인용). 이처럼 은퇴후에 개인

및 가계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자녀나 친지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문제는 가구주의 정규적인 근로소득이 단절된 은퇴가계의 경우, 같은 노인가계라도 가구주가 유급직에 종사하는 가계와는 다른 소득원천이나 지출패턴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구성에서의 변화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Grad, 1990; Hurd, 1987; Schulz, 1992; Schwenk, 1993).

더욱이 최근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흔들리면서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의 인위적인 요소로 인하여 직업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동시에 기대수명은 증가되어 과거에 비해 정년은퇴 이후에도 살아가야 할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은퇴후에도 은퇴이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보유는 중년기 및 노년기를 전후로 한 가계의 중요 재정목표로 부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55세 정년제가 지속되어 왔고 직장에서의 은퇴도 자율이 아닌 강제적으로 부과되며, 아직까지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미발달로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연령과 은퇴시기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격차가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은퇴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위기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택룡, 1994).

이러한 의미에서 동일한 연령대인 노년기 가계라도 전생애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은퇴를 경험한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간의 경제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가계재무계획 및 상담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정경제학 연구대상의 한 분야로써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에 대한 연구는(Zitter, 1991; Schulz, 1992; Zhong, Titus & Johnson, 1993) 노인가계가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연령이나 결혼상태의 구분외에 은퇴여부에 따라서도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퇴여부별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 두 가계간의 재정상태분석은 전체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여 은퇴 노인가

계의 재정상태의 과대평가와 취업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과소평가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다(Zhong, Titus & Johnson, 1993).

본 연구에서는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가계가 보유한 경제자원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고, 두 가계의 소득원천, 지출비목, 자산구성의 백분율 분석을 통해 가계재무구조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가족생애주기에서 가구주의 은퇴가 가계의 재정수준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가를 추론할 수 있으며, 소비지출액의 배분문제, 투자 운용방안등에 대한 예측과 이해를 도와 원만한 은퇴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진 정책입안자들에게 은퇴 노인가계의 생활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불이익 집단"으로 인식된 노인가계 전반에 걸친 복지안의 보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은퇴기 근로자들을 위한 은퇴준비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갖는 기업 및 관련영역에서 기존의 사회심리적인 면이 강조되어 온 은퇴 프로그램의 내용에 부가하여 재정적 측면까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은퇴행동의 사회 경제학적 의미

은퇴는 노년기 초기에 경험하는 사건으로 은퇴후 삶의 질은 은퇴 전의 준비정도에 달려있으므로 구체적인 은퇴준비는 곧 노년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시된다(Huwitz, 1987; 이택룡, 1994). 또한 은퇴는 정규직 직업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안정된 수입의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터 취업차원, 수입차원, 주관적 평가의 세가지 차원에서 정의내리는 보다 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Atchley, 1979), 은퇴행동을 가계에 적용해 볼때 은퇴자는 은퇴연금을 받거나 또는 55세이상으로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은 자와 자신의 사업일선에서 물러난 자로 정의할 수 있다(김미혜, 1993). 노동경제의 측면에서도 은퇴는 노령노동의 유용성 저하에 대한 반

응으로 사회전반의 경제적 비용이 효용을 초과하여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실행되며(김미혜, 1993). 개인적으로 볼 때 노동에 대한 소득효과보다는 대체효과가 더 큰 의미를 가져 소득력의 향상을 기대하지 않거나 기대할 수 없을때 발생하는 인위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Mitchell & Field, 1984).

2. 선행연구고찰

은퇴로 인한 가계의 재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은퇴후 수입이 은퇴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은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Bovenberg, 1990; Grad, 1990; Schulz, 1992; 정영애, 1994). 김미혜(1993)는 은퇴 후의 실질적인 수입액도 중요하지만 은퇴수입이 생활에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수입의 안정성이 은퇴생활의 안정성과 직접 연결되어 은퇴생활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ang, Mok과 Fox(1995)도 은퇴한 노인가계에 비해 취업 노인가계의 평균 가구주 연령이 더 적어 가계의 근로소득액은 취업노인가계가 더 많으나 근로소득 외에 자산, 이전소득 등은 은퇴가계의 보유액이 더 많다고 하였다.

Wang, Mok과 Hanna(1994)도 노인가계에서 은퇴는 소득감소와 이용가능한 시간자원의 증가에 따라 소비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Wagner와 Hanna(1983)는 소득과 가족구성을 생애주기동안 가족의 소비유형에 영향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설명하면서 노인가계의 경우 감소된 가족소득이 소비유형의 변화를 유도하여 그 전과는 다른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였다(Wang, Mok & Fox, 1995에서 재인용).

Zhong, Titus와 Johnson(1993)의 연구에서도 노인가계의 은퇴 유·무에 따른 소득과 순자산의 비교결과, 은퇴자는 비은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은퇴하지 않고 현재 유급직에 종사하는 노인가계가 소득과 순자산 모두 높은 보유수준을 보인다고 하여 근로소득이 취업 노인가계의 경우 소득의 상당부분을 결정한다

는 Schulz(199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순자산의 경우 은퇴한 노인가계에 비해 취업 노인가계가 더 많이 보유한 것은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보다 나은 직장에서 오래 일할 가능성이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Duggins, 1984; Parnes & Less, 1993; Zhong, Titus & Johnson, 1993).

한편 지출부분에 있어서 McConnel과 Deljavan(1983)(Schulz, 1992에서 재인용)은 은퇴 전·후 노인가계의 비교를 통해 은퇴가계의 경우 주거비, 가정식사비와 의료비가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품에 대한 지출은 추가소득중 상당히 적은 비율을 할당하지만, 선물이나 기부행위에 더 많은 비율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Schulz(1992)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적으로 의료비에 더 많이 지출하고, 교통비, 의복비나 여가비에는 더 적게 소비한다고 하였고, Moehle(1990)는 노인가계의 지출내역은 노인가계의 노동상태와 소득수준에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은퇴한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가계의 소득액(소득원천별), 지출액(세부지출 비목별),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보유액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은퇴한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소득원천, 지출내역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구성비중 및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예금, 주식, 채권, 보험, 계, 사채준 돈의 비중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해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

취업 노인가계와 은퇴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근로소득	급여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비정규근로소득+부업소득(만원/년)
비근로소득	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년)
자산소득	금융자산소득+부동산소득(만원/년)
이전소득	국민연금+사학/공무원/군인연금+국가보조금+친지 보조금(만원/년)
기타소득 <sup>a)</sup>	적금단돈+지급받은 보험금+유가증권 매각대금+동산/부동산 매각대금+빌려주었다 받은 돈(만원/년)
총소득액	근로소득+비근로소득(만원/년)
총지출액	식료품비·외식비+주거비+피복 및 신발비+교양·오락비+교육비+휴가비+전기통신, 연료비+의료비(만원/년) <sup>b)</sup>
총자산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보험+계 <sup>c)</sup> +사채준 돈)+실물자산(현재주택 가격)(만원)
총부채	금융기관부채+사채+월부 및 외상부채(만원)
순자산	총자산-총부채(만원)

<sup>a)</sup> : 근로/자산/이전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거나 당해년도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자산 재평가의 의미에 근거하여 산출됨

<sup>b)</sup> : 교통통신비는 산정되지 않았음(2차자료의 분석으로 구성된 변수에서 제외됨)

<sup>c)</sup> : 자산에 포함된 계는 가계의 비수령 계 부분만을 의미함

석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사용된 자료는 1994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이다. 1994년도에 실시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로서, 3,625 부부가구로 구성된 자료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가구주가 현재 기혼의 상태에 있는 55세이상의<sup>1)</sup> 노인가계 681가계였다.

노인가계의 취업/은퇴의 구분은 가구주의 직업 종사상의 직위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 종사자면 취업자로, 미취업자, 무급의 가족종사자, 연로의 경우는 은퇴자로 분류하였다.

## 2) 분석방법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을 산출하였고, 은퇴한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소득액, 지출액, 자산액, 부채액과 순자산액의 재정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취업 노인가계의 경제적 자원보유액을 100%로 하였을 때 은퇴 노인가계가 보유한 자원의 비율을 제시

하였다. 또한 두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각 가계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한 후 비교하여 그들의 재무적 특성을 나타냈다.

##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전체 노인가계 681가계중 은퇴가계는 233가계였으며, 취업가계는 448가계로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가구주 연령은 은퇴가계가 더 높았으며, 소득원수는 취업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만족도와 건강만족도의 경우 은퇴가계의 만족도가 다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취업가계가 은퇴가계에 비해 기타지역 거주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비교적 고령까지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1) 가구주연령을 55세기준으로 노인가계로 분류한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세 정년제가 지속적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은퇴가 노인기의 시작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김디혜, 1993).

<표 2> 조사가계의 일반적 특성

연 속 변 수	은퇴노인가계 (N=233)		취업노인가계 (N=448)		전체가계 (N=681)		
	Mean	SD	Mean	SD	Mean	SD	
가구주연령	67.83	7.27	61.20	5.54	63.50	6.94	
가계소득원수	0.85	0.84	1.62	0.83	1.36	0.91	
경제생활만족도	2.63	0.93	2.72	0.82	2.69	0.86	
건강만족도	2.42	1.06	3.06	0.99	2.84	1.06	
범주형변수	N	%	N	%	N	%	
거주지역	도시	104	44.6	165	36.8	269	39.5
	기타	129	55.4	283	63.2	412	60.5
가구주	중졸	191	82.0	310	69.2	501	73.6
교육수준	고졸	32	13.7	88	19.6	120	17.6
	전문대졸이상	10	4.3	50	11.2	60	8.8
가족형태	핵가족	228	97.9	398	88.8	626	91.9
	확대가족	5	2.1	50	11.2	55	8.1
자가소유	자기	209	89.7	402	89.7	611	89.7
여부	임대	24	10.3	46	10.3	70	10.3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거주지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취업가계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자가 다소 더 많으며, 가족형태는 은퇴가계의 경우 핵가족의 비율이 취업가계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자가소유 여부는 두 집단 모두 자가 90%로 나타났다.

#### IV. 분석결과

##### 1.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보유 자원액의 비교

두 가계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test 결과와 취업노인가계의 보유액을 100으로 두었을 때 보유자원액의 비율을 환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총소득을 살펴보면 은퇴 노인가계의 연평균 가계총소득액은 1,175만원으로 취업가계의 1,578만원보다 적어 은퇴한 노인가계의 소득력의 하락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 소득원천별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는 은퇴 노인가계가 취업 노인가계 근로소득의 약 1/2정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닌 자산, 이전, 기타소득원에서 발생하는 비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은퇴 노인가계의 소득액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55세이상의 미국 은퇴가계를 대상으로 연구한 Grad(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산소득의 구성요소인 금융자산소득과 실물자산소득의 경우, 은퇴한 노인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나 사회, 친지들에게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총이전소득액을 살펴보면 은퇴한 노인가계는 평균 146만원으로 33만원의 취업가계에 비해 더 많았다. 이러한 이전소득의 내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면, 사적 이전소득인 친지보조금만이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은퇴한 노인가계가 118만원으로 17만원을 받는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상당히 큰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지보조금만이 유일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공공정책 측면에서 살펴볼 때 평생을 노동한 후 그 보상으로 사회에서 지급받는 공적 이전소득이 은퇴 이후 노인들의 생계보장수단으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전체 이전소득액중 상당부분을 친지보조금이 충당한다는 사실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개별

〈표 3〉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분석

변수	은퇴노인가계 (N=233)	취업노인가계 (N=448)	t값 <sup>a</sup>	상대 <sup>b</sup> 비율
	Mean	Mean		
총소득(만원)	1,175.15	1,577.56	3.84***	74.5
근로소득	716.00	1,395.39	4.97***	51.3
비근로소득	459.15	182.17	7.87***	252.0
자산소득	215.80	71.38	3.65**	302.3
금융자산소득	27.91	7.46	2.58*	374.1
실물자산소득	187.89	63.93	3.22**	293.9
이전소득	146.27	32.67	7.58***	293.9
국민연금	0.30	0.62	0.71	18.3
사학/공무원/군인연금	11.70	5.14	1.02	237.6
보훈연금	19.18	3.13	1.45	325.2
정부사회단체보조금	5.91	6.45	0.14	91.6
친지보조금	118.19	17.33	7.95***	682.0
기타소득	97.07	78.11	0.57	124.3
총지출(만원)	852.62	929.06	1.28	91.7
식료품·외식비	307.31	314.41	0.42	97.7
주거비	54.05	37.90	1.28	142.6
피복및신발비	53.36	70.42	2.34*	75.8
교양오락비	36.93	49.07	2.00*	75.3
교육비	55.38	118.42	4.76***	46.8
휴가비	6.09	5.78	0.13	105.4
전기통신및연료비	78.29	85.47	2.22*	90.5
의료비	64.76	48.51	2.20*	133.4
총자산(만원)	7,625.55	5,990.34	2.56*	127.3
금융자산액	503.55	567.97	0.57	88.7
실물자산액	7,122.00	5,422.37	2.79*	131.3
총부채(만원)	318.30	468.11	1.62	68.0
순자산(만원)	7,307.24	5,522.23	2.81*	132.3

a : t값을 절대값을 취하여 제시함

b : 취업가계의 자원보유액을 100으로 하였을때 은퇴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백분율

\* P<.05 \*\* P<.01 \*\*\* P<.001

가계내에서의 자원의 분배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궤립조사연구소(1990)(민재성 외, 1993에서 재인용)의 60세이상 노인대상 연구에서 자녀의 원조가 주수입원으로 나타난 노인가계가 63.7%로 대다수의 노인가계가 경제생활을 자녀들로부터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내에서 발생하는 자녀나 친지로부터 노인들에게 가는 경제자원의 이전은 경제적으로 위축된 은퇴 노인가계의 생

활표준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짐(Zachary, 1996)에서 노인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소득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지출액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은퇴여부에 상관없이 집단간의 차이는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그 세부지출비목에서 피복 및 신발비와 교양오락비, 교육비, 전기통신 및 연료비는 취업 노인가계가 은퇴 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피복 및 신발비와 교양오락비는 소득증가에 따

큰 지출이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선택재의 성향을 가짐에 따라 소득액이 감소된 은퇴 노인가계의 경우는 한정된 소득액에서 선택재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더욱이 근로소득의 단절 및 축소는 정기적인 향상소득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화에 대한 필수여부에 따라 지출배분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비를 살펴보면 은퇴한 노인가계의 경우 평균 55만원을 지출한데 반해 취업 노인가계는 118만원을 지출하였다. 이것은 은퇴 노인가계의 평균연령이 68세로 취업 노인가계의 61세에 비해 상당히 고령인점을 감안한다면 은퇴가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감소는 가족의 생애주기상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와 교육비등에서 지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Reinecke(1964), Schulz(1992), Schwenk(199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통신 및 연료비는 취업 노인가계의 경우 평균 85만원으로 은퇴 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지출 내역중 의료비의 경우만 은퇴한 노인가계가 65만원으로 49만원을 보인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적인 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임원비등을 포함한 의료비 부담이 정기적인 소득원이 감소되는 은퇴가계의 생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연령증가와 의료비 지출액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Reinecke(1964), Fuch(1988), Schulz(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출비목별 추이에서 두 가계의 비교결과는 Mochtle(1990)의 연구처럼 노인가계의 지출내역은 노동상태와 소득수준에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총합인 총자산의 경우 은퇴한 노인가계의 평균액이 7,626만원으로 5,990만원을 제시한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예금, 주식, 채권, 보험, 계와 사채로 구성된 금융자산액은 집단간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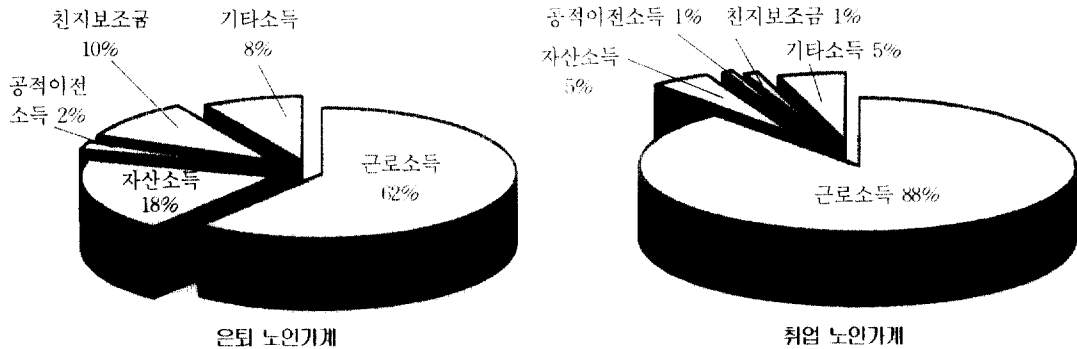
이를 나타내지 않은것에 반해, 보유하거나 살고있는 주택가격을 제시한 실물자산액의 경우 은퇴한 노인가계의 평균 보유액은 7,122만원으로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다. 총부채액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총자산액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은 은퇴한 노인가계가 평균 7,307만원으로 5,522만원을 보유한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퇴직금으로 인한 자산증가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총자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실물자산액이 은퇴 노인가계의 경우 월등하게 더 높은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가계가 총자산액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 Fuch(1988)와 Schiller(198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취업 노인가계의 보유자원액을 100으로 하였을때 은퇴 노인가계는 비근로소득, 자산소득, 금융자산소득, 실물자산소득, 이전소득, 친지보조금이 더 많았으며, 근로소득만이 더 적었다. 지출에 있어서는 주거비, 휴가비와 의료비의 경우는 은퇴 노인가계가 더 많은 액수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액과 총부채는 취업 노인가계가, 총자산, 실물자산액과 순자산액은 은퇴 노인가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소득, 지출과 자산의 구성비중

전체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원천의 비율에 대한 두 노인가계간의 비교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근로소득은 은퇴 노인가계의 경우 총가계소득의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원은 취업한 가족원에 기인하는 것이다. 반면 취업 노인가계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88%를 차지하여 전체 소득원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서 파생된 소득원인 자산소득의 경우는 은퇴 노인가계가 전체 총가계소득액의 18%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취업노인가계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의



〈그림 1〉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소득원천 백분율

자산 재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타소득도 은퇴 노인가계는 8%, 취업 노인가계는 5%로 나타나 자산소득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국민연금, 사학/공무원/군인연금, 정부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은퇴 노인가계는 2%, 취업 노인가계는 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녀나 친지들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적 이전소득인 친지보조금의 경우 은퇴 노인가계는 총소득액의 10%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취업 노인가계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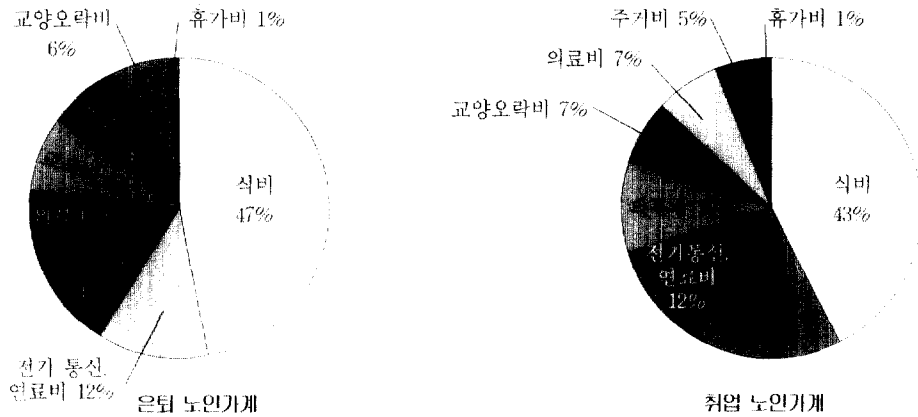
이러한 소득원천에 따른 백분율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가계, 특히 은퇴이후 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은퇴 노인가계의 중요한 소득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가정내의 부(wealth)의 이전에 의해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향후 가장 보편적인 소득보장 수단으로써 사회와 그 책임을 나누는 각종 공적연금 제도를 확충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구별하여 볼 때 은퇴 노인가계는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근로소득 대비 비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당부분 차지하나, 취업 노인가계는 절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노인가계라도 가구주의 취업유무에 따라 다른 경제환경에 처해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결과는 은퇴한 노인가계의 근로소득 감소와 이전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중 증가를 제시한 Wang, Mok과 Hanna(1995)의 연구,

Zhong, Titus와 Johns(199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림 2〉는 두 가계의 지출비목의 구성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출비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의료비와 교육비의 차이이다. 즉 상대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은퇴 노인가계의 경우 총지출액의 10%를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취업 노인가계는 7%로 적게 나타났다. 교육비는 평균연령이 보다 젊은 취업 노인가계는 16%를 지출하며, 자녀의 출가등으로 축소기에 있는 은퇴 노인가계는 자녀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8%로 나타났다. 반면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등의 선택재의 경우는 사회활동이 많은 취업 노인가계의 경우 10% 대 8%, 7% 대 6%로 은퇴 노인가계에 비해 더 높은 지출율을 보였다. 한편 식비/외식비의 경우 은퇴 노인가계가 47%, 취업 노인가계가 42%로 큰 차이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앵겔함수의 의미로만 해석해 본다면 은퇴 노인가계의 생활수준이 더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거비의 경우는 은퇴한 가계가 약간 더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전기통신, 연료비나 휴가비등은 차이를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은퇴 노인가계의 경우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전체 생계비중 차지하는 주거비/식사비/의료비의 증가와 교통비/의복비/여가비의 감소를 제시한 McConnei과 Dehavan(1983) (Schwenk, 1983), Schwenk(1990, 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표 4〉는 두 가계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며 〈그림 3〉은 금융자산의 상세한 비





〈그림 2〉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지출비목 백분율

중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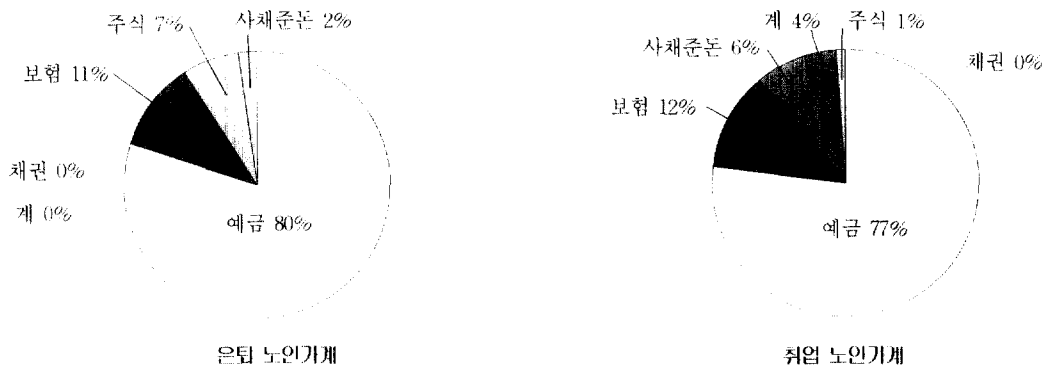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총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자산액과 실물자산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은퇴 노인가계의 경우는 금융자산이 6.60%, 실물자산이 93.40%로 구성되며, 취업 노인가계의 경우는 금융자산이 9.48%, 실물자산이 90.52%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노인가계가 금융자산에 비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것은 노인가계가 주택을 유동화시키지 못하여 대부분의 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보유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에 있어서 주택의 보유는 경제적 의미에서 볼 때 경제적 독립과 여유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자가주택의 가치가 순자산의 상당부분을 이룬다고 한 Torrey와 Taeuber(1986), Schiller(1989), Schwenk(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은퇴 노인가계가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쉽게 유동화시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6.6%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적인 현금보유 수준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므로 은퇴 이후 경제적인 위기극복에 상당한 문제점을 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 보면 가구주가 취업한 노인가계의

경우 전체 금융자산에서 예금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7%, 보험이 12%로 총 89%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퇴 노인가계의 경우는 예금이 80%, 보험이 11%로 총 91%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 노인가계의 안전자산의 보유비중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채준 돈, 계, 주식, 채권 보유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취업 노인가계의 경우 사채준 돈 6%, 계 4%, 주식에 1%, 채권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총 11%만을 위험자산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노인가계는 9%를 이 자산군으로 보유하고 있다. 〈표 3〉의 전체적인 평균 금융자산액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가계 자산투자의 특징인 높은 안정지향적인 투자경향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은퇴 노인가계가 다소 더 안정지향적인 금융자산 구조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후 경상소득을 파생시킬

〈표 4〉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

	금융자산	실물자산
은퇴 노인가계	6.60%	93.40%
취업 노인가계	9.48%	90.52%



〈그림 3〉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백분율

수 있는 소득원이 투자의 중요동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가 보유한 총자산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은퇴증에 가장 낮은 안전지향적인 투자형태를 보인다고 한 Weagly와 Gannon (199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인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비교분석에서, 은퇴 노인가계는 가계가 보유한 자산소득, 이전소득, 비근로소득 및 의료비, 총자산, 실물자산액과 순자산을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취업 노인가계는 근로소득과 지출비용중 피복 및 신발비, 교양 오락비, 교육비와 전기통신 및 연료비의 경우 평균 액수가 더 높았다. 또한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 구성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에 따른 변화를 추론하여 보면, 은퇴 이후는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자산소득이 증가하며, 이전소득중 사적 이전소득인 친지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은퇴후 노인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은 은퇴이전 가계와 비교했을때 소득원천 비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계가 보유한 자산에서 두 노인가계 모두 실물자산이 총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

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모두 경상소득으로의 환원이 용이한 예금 및 보험의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준비, 여가, 건강, 재취업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은퇴준비 프로그램 중 성공적인 은퇴후 생활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상황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게 은퇴 이후의 재무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은퇴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어느정도 해야한다는 적절한 액수는 없지만 각 가계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준비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둘째, 은퇴 노인가계와 취업 노인가계의 소득원천은 은퇴 노인가계의 근로소득 감소와 자산소득, 이전소득등의 비근로소득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은퇴후 안정적인 소득보장안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반면, 가족원의 부의 이전인 친지보조금은 총소득원중 10%의 비중을 보여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가족내 부의 이전이 은퇴 노인가계의 생활수준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며, 동시에 우리의 실정이 아직까지는

공적측면의 사회복지보다는 개별가계의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는 정부에서 조세감면과 이자세 면세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적 은퇴준비인인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적인 노후소득보장책 역시 장기적인 투자선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산을 가진 계층에게만 자산 포트폴리오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매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기회마저도 살릴 수 없는 많은 빈곤가정에게는 또 하나의 불평등한 경제적 자원획득 기회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사회에서 공공이익의 차원에서 공적이전소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5세이상 노인가계중 가구주가 은퇴한 가계와 취업한 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했기 때문에 유급직종에서의 은퇴라는 경제적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선행연구결과 은퇴후의 재정상태는 은퇴이전의 직업관련요인이 매우 큰 변수로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적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은퇴전·후 재정상태의 비교는 은퇴이후에 변화된 경제생활에 대한 안내와 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만, 비교집단인 취업 노인가계와의 연령의 차이가 적어 생애주기적 차원에서의 설명력에 다소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로는 장기적인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은퇴후 경제적 준비안에 대한 재정상태의 분석이 수행되어 이 결과가 전반적인 은퇴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13(2), 15-29.  
 2)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3) 민재성 외(1993). *한국의 노령화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4)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5) 이가옥 외(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이택룡(1994). 퇴직기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프로그램 욕구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저울호*, 45-56  
 7) Grad, S.(1990). Income change at retirement. *Social Security Bulletin*, 53(1), 2-10.  
 8) Hurd, M.D.(1987). Saving of the elderly & desired bequest.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174-179.  
 9) Mitchell, O.S. & Fields, G.S.(1984). The economics of retirement behavior. *J. of Labor Economics* 2(1), 84-105.  
 10) Schiller, B.R.(1989). *The economics of poverty & discrimination*, fifth edition, Prentice-Hall.  
 11) Schwenk, F.N.(1990). A comparison of households headed by persons 55 to 65 years of age: retired and employed. *Family Economics Review* 3(3), 19-25.  
 12) \_\_\_\_\_(1993). Housing expenditures of the elderly: owners and renters. *Family Economics Review* 6(3), 2-7.  
 13) \_\_\_\_\_(1995). Assets of elderly households. *Family Economics Review* 8(1), 13-31.  
 14) Schulz, J.H.(1992). *The economics of aging*. 5th(ed), Auburn House.  
 15) Torrey, B.B & Taeuber, C.(1986). The importance of Asset Income Among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 Wealth*, 32, 443-449.  
 16) Wang, H., Mok, C.J. & Fox, J.(1995). Food expenditure patterns of elderly consumers: a question of time allocation. *FERM Biennial*, 185-191.  
 17) Weagly, R.O. & Gannon, C.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CP* 2, 131-154.  
 18) Zhong, L.X., Titus, P.M. & Johnson, D.P.(1993). The diversity of income and networth of the elderly. *The Proceedings of the ACCI* 39, 74-81.